

호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제14-3차 회의록

I. 회의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오후 4시

II. 회의 장소 : 호서대학교 본관 204호 교무위원회 회의실

III. 참석자 :

구 분	인원	성 명
참석의원	11명	박윤철, 장월경, 이준호, 장도현, 하판덕, 이한식, 유영근, 정해천, 임현수, 이정팔, 류지혁
불참의원	0명	

IV. 안건

- 학칙, 대학원 학칙 심의
- 2014학년도 호서대학교 추가경정예산(2차) 자문
- 2015학년도 호서대학교 본예산 자문
-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V. 회의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박윤철 의장 : 간사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곽경대 간사 : 대학평의원 정수 11명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박윤철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3차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 행을 위해서 이정팔 의원께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팔 의원 기도)

2. 안건상정 처리

박윤철 의장 : 오늘의 안건은

- 학칙, 대학원 학칙 심의
- 2014학년도 호서대학교 추가경정예산(2차) 자문

- 3) 2015학년도 호서대학교 본예산 자문
- 4)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이전 회의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대 간사 : (2014-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1)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 : 박윤철 의장
- 2)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 학칙: 원안대로 통과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창업대학 구체화에 따른 개정
 - 창업대학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창업에 의한 휴학은 일반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 학칙에 명시
 -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부결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대학원 운영 등에 따른 대학원 학칙 개정
 -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일 경우 '생명윤리' 교육이수 명시
 - ⇒ 생명윤리 교육이수에 관한 내용이 법적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후 재심의하기로 함.
- 3) 2014학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자문
 - * 세입·세출 : 183,417,947 천원

박윤철 의장 : 지난 회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전원 의견이 없음을 표시하므로) 안건 심의에 앞서 간사와 기록하시는 분께서 정확하게 회의록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윤철 의장 : 그럼 제1안건인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관리팀 이문범 과장 :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시행령 변경에 따른 개정
 - 졸업학위명 변경(공학인증)
 - 학부조정/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박윤철 의장 :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자
류지혁
마소진

장도현 의원 : 학칙 시행규칙 참고자료 43조에 보면 '강의평가가 기준미달인 경우, 대학원을 포함한 전체 책임시수 이상의 초과강의를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학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철 의장 :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행규칙은 학칙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학칙 담당자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병 과장 : 법·규정상 학칙 시행규칙은 평의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경대 간사 :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는 법·규정상 학칙만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칙시행규칙은 참고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박윤철 의장 : 그렇다하더라도, 시행규칙도 학칙에 근거 기준이 없으면 시행규칙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으니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도현 의원 : 우리대학의 학칙 시행규칙이 학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윤철 의장 : 학칙 개정(안)에 시행규칙이 첨부되어야 하며, 학칙 시행규칙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팔 의원 : 동의합니다.

곽경대 간사 : 법령검토 시 실질적으로 학칙은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시행세칙은 학칙을 근거로 제(개)정 됩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해야하는 사항은 학칙까지 심의를 하며, 시행세칙의 경우에는 대학의 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낸 이유는 학칙에 대한 심의 목적 이 아니며, 참고자료로 배포를 한 것입니다.

이춘호 의원 : 심의를 잘못하게 되면 추후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곽경대 간사 :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공포하기 전에 사전에 개시판에 공고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이정팔

류지혁

곽경대

이춘호 의원 : 사전공고를 사흘정도의 기간에 의견을 개진하려면 소속, 직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건 요식행위정도로 보여 집니다.

박윤철 의장 :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칙을 심의할 권한이 있고, 학칙 내 시행규칙 포함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으니, 좀 더 검토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습니까?

유영근 의원 : 제18조제6항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팔 의원 : 수정해서 반기로 동의합니다.

정해천 의원 : 재청합니다.

박윤철 의장 :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은 가·부로 묻고, “가” 하시면 “예” 하시고, “부” 하시면 “아니오”라고 대답 하여 주십시오. (전원 “예”로 찬성 표시하므로) 학칙 개정(안) 제18조제6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철 의장 : 다음으로 대학원 학칙에 대하여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교학팀 이창열 팀장, 벤처대학원교학팀 김원기 팀장 :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 대학원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벤처전문대학원 명칭 변경(벤처전문대학원→벤처대학원)
 - 교육부 대학원지원과(“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4.05)실시
 - 각 대학원간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 불일치 수정
 - 대학원 정원조정

박윤철 의장 : 대학원 학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 벤처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보면 벤처전문대학원을 명칭 간소화 차

이창열

류지혁

김원기

원에서 벤처대학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대학원'이라는 단어는 특수목적으로 한정되어 사용해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간소화 차원에서 일의로 삭제해도 무방한지요?

김완기 팀장 : 예 그렇습니다. 관련사항은 비교에 표현한 것처럼 명칭을 간소화해서 충보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문' 자를 삭제했다고 해서 전문대학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옮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 전문대학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전문' 자를 붙이고 있는 대학이 있는 반면 '전문' 자를 붙이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이 '전문' 자를 붙이지 않는 사례입니다.

임현수 의원 :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대학은 '전문'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지만, 나머지 대학은 전문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문'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대학이 '전문' 자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 검토를 하셨으리라는 전제하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철 의장 : 전반적으로 대학원 학칙을 보면 절차상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칙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대학평의원회에 심의를 거친 이후에 확정하고, 그 확정된 학칙에 입각하여 외부 공고를 내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안건인 대학원 학칙 개정(안)은 이미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개되어 있는바,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개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정차근 처장 :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절차상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학원 운영상 학생충원이 어려워 정원 미달인 경우가 있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철 의장 : 다음부터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 공고를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완결성 있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완기 팀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철 의장 : (추가 의견이 있는지를 물고 없으므로) 각 대학원 학칙 개정에 대하-

여 동의하십니까?

이정팔 의원 : 동의합니다.

유영근 의원 : 재청합니다.

박윤철 의장 :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은 가·부로 묻고, “가” 하시면 “예” 하시고, “부” 하시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십시오. (전원 “예”로 찬성 표시하므로) 각 대학원 학칙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철 의장 :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2014학년도 호서대학교 추가경정예산(2차) 자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대 간사 :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2014학년도 호서대학교 2차 추가경정예산서

- 자금예산의 규모

단위: 천원

2014학년도 2차 추경예산	2014학년도 1차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178,458,888	183,417,947	-4,959,059	-2.7%

박윤철 의장 : 예산안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현 의원 : 무엇보다 예산이 투명하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0억 정도 소요되는 당진캠퍼스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곽경대 간사 : 당진캠퍼스는 본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5년 1월 대학평의원회 회의 시 당진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대비하였을 때 예산의 증감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차근 처장 : 특별히 비밀로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캠퍼스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정팔

류지역

유영근

당진캠퍼스 조성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구성원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철 의장 : 201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동산 부분은 적립금에서 지출되었는지요? 나머지 26억은 전액 교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곽경대 간사 :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춘호 의원 :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당진캠퍼스를 조성하였으니, 예상되는 '경쟁률'이나 '운영계획'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뢰하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차근 처장 : 당진캠퍼스의 사업예상성과와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이 없으며, 우리대학 보다는 산업부, 충청남도, 당진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대학만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결정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윤철 의장 : 대학평의원회의 실의 기능 안에 '대학의 중요한 정책의 변화' 사실 당진캠퍼스는 제4캠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발전에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심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자체, 산자부의 기관 예산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이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평의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처장님이 다음번 회의에 당진캠퍼스와 관련한 대학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정리하여 말씀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정차근 처장 : 구체적으로 당진캠퍼스의 어느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지요?

박윤철 의장 : 당진캠퍼스 추진 경과와 예산투자내역,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등 진행상황에 대하여 대학정책의 큰 틀로 정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차근 처장 : 예. 알겠습니다.

박윤철 의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물겠습니다.

유영근 의원 : 동의합니다.

이윤철

- 7 -
류지혁

유영근

이춘호 의원 : 재정합니다.

박윤철 의장 : 동의와 재청에 의해 201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철 의장 :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인 2015학년도 호서대학교 본예산에 대한 자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대 간사 :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2015학년도 호서대학교 본예산서			
- 자금예산의 규모			단위: 천원
2015학년도 본예산	2014학년도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152,177,805	178,458,888	-26,281,083	-14.7%

박윤철 의장 : 2015학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처에서 예산 준비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다음번에는 미리 자료를 주셔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경대 간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철 의장 : 본예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하는데, 등록금이나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학생평의원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혁 의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본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윤철 의장: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70억 등록금 수입은 출었는데 CK사업에서는 얼마를 지원 받고 있습니까?

정차근 차장 : 40억입니다.

박윤철 의장 : 당진에 예산에 편성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춘호

류지혁

박윤철

정차근 처장 : 2015년도는 2.4억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재학률을 105.2퍼센트로 예상해서 등록금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재학률 지표가 떨어져서 등록금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적자재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에 추경편성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물론 적립금이 있지만 우리대학 규모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수입구조가 타이트한 상황에서 인건비는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2016학년도는 훨씬 더 긴축된 예산구조로 편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비상수단까지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윤철 의장 : 연구비는 벤처신학을 줄이고 일반연구비가 투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차근 처장 :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내연구비 예산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공계와 자연계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교내연구비 규모는 줄이고 신임교수 연구비와 인문사회 기초 학술 연구비는 일정부분 유지하겠다는 원칙과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원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비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계획이며, 1학기 중 마무리해서 2학기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윤철 의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물고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물겠습니다.

이정팔 의원 : 동의합니다.

정해천 의원 : 재청합니다.

박윤철 의장 : 동의와 재청에 의해 2015학년도 본예산(안) 자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현 의원 :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호서예술전문학교’ 가 호서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곽경대 간사 : ‘호서예술전문학교’ 는 학교법인이 다르며 호서대학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박윤철 의장 :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불합리하거나 추가해야할 내용들이 있습니

이정팔

류지역

장도현

다. 타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엄격하게 적용되는 내용들도 있고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는 부분도 법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획처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 전반적인 시스템이 기획처 위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원회 자체적으로 정기회의가 있어야 되고, 소집의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돌아보고, 명확하게 불합리한 것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곽경대 간사 :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규정상 학칙 제(개)정, 예산 자문은 총장님 이 소집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법·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처 위주로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박윤철 의장 : 가능한 원칙에 맞게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는 기본적으로 총장님의 요청을 받거나, 평의원회 2/3의 요청을 받아서, 혹은 제가 판단해서 공지게시판에 공식적으로 회의 개최 공고를 할 것입니다.

정해천 의원 : 그렇다면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곽경대 간사 : 운영규정을 평의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정한 평의원회 운영규정 내에서의 변경만 가능합니다. 평의원회 운영규정의 개정도 관련 법·규정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춘호 의원 : 수고스럽겠지만 회의 개최에 관하여 문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차근 처장 :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철 의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폐회 동의를 물겠습니다.

이정팔 의원 : 동의합니다.

유영근 의원 : 재청합니다.

(박윤철 의장이 2014-3차 회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고 전원 “가” 형으로 폐회를 선언함)

위 의결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의원이 서명 날인하며 박윤철 의원, 이한식 의원, 류지혁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여 간서명 할 것을 의장이 요청하다.

상기 기재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15년 1월 26일

의장 박윤철	<u>박윤철</u>	의원 장원경	<u>장원경</u>
의원 이춘호	<u>이춘호</u>	의원 장도현	<u>장도현</u>
의원 하판덕	<u>하판덕</u>	의원 유영근	<u>유영근</u>
의원 정해천	<u>정해천</u>	의원 이한식	<u>이한식</u>
의원 이정팔	<u>이정팔</u>	의원 임현수	<u>임현수</u>
의원 류지혁	<u>류지혁</u>		